

한국심리학회지 : 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22, Vol. 13, No. 1, 23-52
<http://doi.org/10.53302/kjfp.2022.03.13.1.23>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법관 대상 FGI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과 토픽 모델링 비교

강 태 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현직 법관 24명을 대상으로 법관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여론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와 사회여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초점 집단 면접(FGI)을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을 수행하였다.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상규, 사회통념, 법감정, 국민정서를 여론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고, 여론을 특정한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종류나 법적 쟁점에 따라 여론이나 사회통념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모델링 결과는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고, 특정 토픽의 발현 가능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담당 사건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 여론, 재판, 법관, 초점집단 면접, 근거이론, 토픽 모델링

[†] 교신저자: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서초구 테봉로 114
E-mail: taegong@kicj.re.kr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판단 주체인 법관의 개인적 특성과 상태, 당해 사건 및 피고인과 관련된 요소,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김현석, 2019). 예를 들어, 법관의 생활 경험이나 학습 경험, 사법철학과 가치관, 법관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판단 주체와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론은 당해 사건 및 피고인과 관련된 요소로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그에 따른 여론 동향,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 시나리오 실험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여론이 실험 참여자의 법적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영오 등, 2014). 현직 판사이며 법학자인 포즈너(Posner, 2008)는 법관도 일반인처럼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쌍방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소통 환경이 구축되고 SNS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재 재판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 여론은 현실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최우철 · 박서하 · 노승국, 2021),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사건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강지현, 2019). 또한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 명예훼손 사건’이나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서처럼,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그에 대한 댓글을 통해 펼쳐지는 찬반 논쟁은 모두에게 공개된다.

재판에서 대중의 관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는 대중의 관심이 무

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개인의 인격권보다 언론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쟁점이 된 표현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공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검토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 도17237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도 *Snyder v. Phelps* 사건(131 S. Ct. 1213 (2011))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표현에 대한 공동체 관심사(community concern)와 보도 가치(news interest)를 제시하였다(김웅규, 2013).

그런데 재판과 사회여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다. 주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사회여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사회여론을 형성시키는 사회적 힘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정책적 · 정치적 선호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Giles, Blackstone, & Vining, 2008), 사회적 이목을 굉장히 끄는 사건이나 아예 끌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Collins & Cooper, 2016). 반면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과 여론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양자 사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Johnson & Strother, 2021).

또한 규범적 관점에서도 재판과 사회여론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사회여론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사회여론과 괴리되지 않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재판과 사회여론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은 만나기 어려운 평행선을 그린다. 법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의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회여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법적 판단은 당사자의 권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사회여론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Hart, 1997; Dworkin, 1986).

재판과 여론의 관계에 대한 인식

호주의 판사 대상 인터뷰 연구(Mack, Anleu, & Tutton, 2018) 결과에 따르면,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public confidence)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사회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내 법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사회여론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판사들이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사회여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경험적 연구가 드물다.

국내 법의식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법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다. 법의식 조사에 참여한 일반인 응답자의 77.0%가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이세정 · 이상윤, 2008). 반면에 법전문가(법학교수, 법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 응답자의 30.4%만이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이상윤a, 2009).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95.6%)과 법전문가(87.0%)의 대다수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여론이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다. 신의기와 강은영(2012)은 일반인 응답자에게 수사, 기소, 재판과정이 여론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는지를 4점 척도(1점: ‘여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소신껏 한다고 생각한다’; 4점: ‘여론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로 물었고, 그 결과 법원의 중립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2.47점), 그 다음으로 검찰(2.46점), 경찰(2.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을 국가기관 중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현직 판사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법적 결정 단계에서 판사들이 법률적 문제, 사회적 경험의 부족, 도덕적 딜레마, 사회여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 강태경, 2016). 이 설문에 참여한 법관들 중 절반 이상(57.1%)이 결정 단계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경험의 부족’(14.3%), ‘도덕적 딜레마’(10.0%), ‘사회여론’(7.9%)이 결정 단계에서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법관들이 사회여론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추론하기는 어렵다.

법관의 역할과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이 사건과 관련된 사회여론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법관의 역할과 법관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법관의 역할

법관은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사실 판단, 규범 해석, 사회정의 실현, 분쟁 해결, 절차 진행, 판결문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조규락 · 김선연, 2016). 법관의 역할을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관을 재판 절차의 공정한 진행자로 상정한다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현석, 2019). 미국에서는 *Sheppard v. Maxwell* 판결(384 U.S. 333 (1966))을 계기로 사건에 대한 부당한 여론의 영향력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사건 관찰을 이전하는 문제가 생점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사회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사회정의 실현자 및 분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법관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버머스(J. Habermas)의 소통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법관의 역할을 바라보면, 법관은 법의 형성과 적용에서 민주적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 체계의 행위자들과 대화’를 바탕으로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이상돈, 2016).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법관은 다른 사회 체계의 행위자들의 관점과 법적 관점을 교환하기 위해 사회여론에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행정기관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재판에서 판사는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나 행정 관행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같이

가치판이 개입될 수 있는 생점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판사는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사회여론은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외부적 요소로 지목된다.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과 같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박종현, 2016; 유은정, 2013; 이상윤b, 2020). 그런데 재판에 대한 여론의 압력은 정치적 압력과 달리 언제나 명백하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패륜적 흉악범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직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법관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황과 법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윤진수, 2003).

양형과 같이 법관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할 재량을 가진 사안이나 둘 이상의 법해석이 가능한 어려운 사건(hard cases)의 경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법관은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촉어야 하는가? 헌법 제103조가 법관에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법관은 다수의 판단을 촉기보다는 직업적 양심, 즉 객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헌법에 담긴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은정 · 강태경 · 김현섭, 2015). 더 나아가 법관이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법의 해석 작업에 충실히 않고 다수의 가치판단을 따르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Dworkin, 1977).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공개변론 등은 사회여론이 합리

적으로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박은정 · 강태경 · 김현섭, 2015). 법원은 실천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합리적 토론을 촉발하여 합리적 여론을 형성하는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즈(Rawls, 2005)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을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전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구문제

다음 세 가지 물음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이다.

연구문제 1. 법관들은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여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연구문제 2. 법관들은 사회여론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연구문제 3. 담당 사건의 종류에 따라 법관들은 사회여론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이 재판과 관련된 사회여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법관 대상 인터뷰를 통해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해외 연구(Mack, Anleu, & Tutton, 2018)의 예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 결과를 분석하여 위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인 FGI는 면접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한 소수의 참석자들(통상적으로 10명 이내의 인원)과 사

회자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집단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참여자 상호간의 자극을 통해 해당 주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나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FGI는 설문 문항 작성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데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하봉준, 2013).

인터뷰 분석 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과 토픽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법과 최근 비정형 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법 중 하나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여 판사 대상 FGI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 접근법을 통해 재판과 관련된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인터뷰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한 토픽 모델링 기법이 질적 연구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문제를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방법론인 근거이론 접근법이 활용된다. 근거이론은 그 자체로 단일한 연구 방법이라기보다는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방법론의 집합을 의미한다(Baumer, Mimno, Guha, Quan, & Gay, 2017). 근거이론 접근법은 질적 자료에 대한 관찰을 비교함으로써 그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귀납적 접근법으로서, 질적 자료에서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드는 데 방향을 제시한다(Glaser & Strauss, 1967).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뷰 자료가 비정형 자료라는 점에 차안하여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Robert et al., 2014; Baumer et. al., 2017; 손병덕 · 김민선 · 허계형, 2020; 이정숙 · 박진영, 2020; 이진리 · 박승우, 2021). 토픽 모델링은,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가공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하나이다(강만모 · 김상락 · 박상무, 2012; 백영민, 2017). 토픽 모델링은 비정형 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해당 자료 작성자의 생각과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Baumer et. al., 2017; 장재윤 · 최연재 · 강지연, 2020). 그리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 비정형 자료의 내적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자료와 관련된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김청택, 2019).

토픽 모델링은 자료에 기반을 두고 의미망을 분석하고, 근거이론 접근법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관찰을 비교함으로써 그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귀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 바우머 등(Baumer et al., 2017)은 동일한 텍스트 자료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결과와 토픽 모델링 결과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접근법이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 법

표적 집단 인터뷰 및 분석 대상

총 29명의 현직 판사를 6개 그룹으로 나누

어 구조화된 FGI를 실시하였다.¹⁾ 연구 참여자는 담당 사건 종류와 법조경력을 고려하여 모집되었다. 민사 전담 판사 11인, 형사 전담 판사 11인, 행정 전담 판사 7인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평균 법조경력은 인터뷰 시행 일 기준 12.21년($SD = 4.66$)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사법연수원 기수 최댓값은 41기(2012. 1. 수료), 최솟값은 24기(1995. 1. 수료)이었다. 인터뷰 주제는 ‘재판과 사회여론의 관계’,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 ‘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에 관한 의견이었다. 이 중 본 연구의 관심사인 재판과 사회여론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다.

사회적 여론이 판결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준 경험이 있으시면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론을 재판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중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는, 우선 ‘여론’이 무엇인지, 이는 ‘사회통념’, ‘사회상규’, ‘상식’, ‘국민법감정’, ‘국민정서’ 등의 개념 중 어느 것과 같거나 유사한지, 다르다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지가 있겠습니다.

FGI 녹취록 중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구 참여자별(민사 전담 10인, 형사 전담 8인, 행정 전담 6인)로 발췌하여 총 24개의 문서를 만들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해당 질문에 답

1) 인터뷰 진행 기간: 2016. 11. 14.~2016. 11. 28.;
인터뷰 분량 약 6시간 분량.

변하지 않은 5명 제외). 분석 대상 연구 참여자의 평균 법조경력은 인터뷰 시행일 기준 12.79년($SD = 4.80$)이었다.

근거이론 분석

자료에서 서로 다른 사건들을 비교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거나 중요한 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개념적 범주 (conceptual categories)와 이론적 주제(theoretical themes)를 구성하였다(Glaser, 1965).

줄 단위 분석

근거이론 방법에 따른 분석 원칙에 따라, 연구자는 24개의 문서로 재구성된 인터뷰 녹취록 내용을 줄 단위로 읽으면서 패턴과 공통된 생각을 메모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범주가 생성되고, 수정되고, 통합되고, 제거되면서 최적화되었다.

코딩

자료는 차마즈(Charmaz, 2014)가 제시한 초기코딩, 초점코딩 이론코딩 순으로 분석했다. 초기코딩은 자료를 정리하여 유목화하고 적절한 개념을 붙임으로써 자료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초점코딩은 초기코딩에서 만들어진 범주를 좀 더 추상적인 범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이론적 코딩은 초기코딩과 초점코딩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서술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각 코딩 단계에서 범주가 자료에서 관찰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대 사례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범주는 계속 수정된다.

본 연구의 자료 코딩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법학 전공자 2인(법학박사)이 참여하였

다. 본 연구자가 자료의 코딩을 수행하였고, 또 다른 법학 전공자가 코딩 결과를 검토하였다. 24개의 문서로 재구성된 인터뷰 녹취록 내용에 대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168개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초기코딩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개념들로부터 65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다음 초점코딩 과정을 통해서 초기코딩 범주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20개의 범주로 묶고 그 핵심과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을 붙였다. 이론적 코딩 과정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여론에 대해서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서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초점코딩에서 구성한 20개의 범주를 6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각 범주의 내용은 ‘부록’ 참고). 코딩 과정은 다음과 예시와 같다.

【원자료】 “.... 일단 여론이라는 게 사실 무엇이 여론인지, 네이버 뉴스 댓글에 달리는 것들이, 댓글 순위 높은 것들이 과연 여론인지,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념】 인터넷 기사 댓글의 내용으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 / 순위가 높은 댓글의 내용으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

【초기코딩 범주】 무엇이 여론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출처 찾기가 어려움

【초점코딩 범주】 여론의 내용 파악의 어려움

【이론적 코딩 범주】 여론의 개념화

토픽 모델링

구조적 토픽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토픽 간 상관을 전제한 구조적 토픽 모델(STM; Structural Topic Model)을 적용하였다. STM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상관 토픽 모델링(CTM; Correlational Topic Modeling)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픽 모델링은 특정 주제의 단어 분포와 문서의 주제 분포의 결합으로 문서 내 단어들이 생성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실제 관찰 가능한 문서 내 단어를 기초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제의 단어 분포와 문서의 주제 분포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LDA 방법은 각 주제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반면에 CTM은 주제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Blei, 2006) 주제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문헌별 주제 분포를 로스스터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CTM은 LDA보다 더 현실적인 토픽 모델을 제공한다고 평가된다(Blei & Lafferty, 2007; 장재윤 등, 2020).

STM은 각 토픽의 상관관계를 전제하면서 각 토픽의 발현 가능성(prevalence)과 문서의 메타 정보(예: 작성 시기, 작성자 정보 등)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Roberts et al., 2014; 백영민, 2020). 메타 정보 없이 수행한 STM은 CTM으로 축소된다(Roberts et al., 2014; 장재윤 등, 2020). R 프로그램의 `stm` 패키지에서 메타 정보 없이 수행된 STM은 기존의 CTM 방법보다 속도 및 지속성(held-out log likelihood)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다(Roberts et al., 2014; 장재윤 등, 2020).

인터뷰에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LDA 방법이 적용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STM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중심으로 그룹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은 상당 부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픽 간 상관성을 전제로 한 STM을 적용하였다. 메타 정보 없이 STM을 수행하여 법관 FGI 내용의 토픽을 탐색하고, 메타 정보로 FGI 참여 법관의 ‘담당사건의 종류’와 각 토픽의 발현 가능성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전자의 목적은 탐색적(exploratory)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목적은 다소 확증적(confirmatory)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통계 프로그램 R에서 `tm` 패키지(<https://github.com/cran/tm>)를 활용하여 녹취록 문서 24개를 토큰화(tokenization)하고, 말뭉치(corpus)를 생성하였다. 토큰화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뭉치에서 명사만 추출하고, 불용어(stopword) 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위해 ‘부산대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http://speller.cs.pusan.ac.kr>)를 사용하여 오탈자와 맞춤법을 점검하고, 명사 추출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녹취록에서 ‘아, 아니, 어,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등’과 같은 채움말(speech filler)과 ‘그것(그거), 이것(이거), 생각, 때문’ 등과 같이 자주 등장하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불용어로 제거했다. 그리고 명사 추출을 위해 한글 형태소 분석기인 KoNLP 패키지(<https://github.com/haven-jeon/KoNLP>)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24개 문서,

716개 명사'로 구성된 문서-단어 행렬(DTM)을 구성하였다. 이 행렬을 기준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 추출

본 연구에서는 R에서 실행할 수 있는 stm 패키지(<https://github.com/bstewart/stm>)를 이용하여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토픽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stm 패키지의 searchK 함수가 제공하는 토픽 수에 따른 의미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 배타성(exclusivity), 지속성(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의미적 일관성 지표는 특정 토픽에서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단어들의 동시 출현 확률을 보여주고, 배타성 지표는 특정 토픽에서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다른 토픽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Schmiedel et al., 2019). 높은 의미적 일관성은 특정 토픽의 내적 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높은 배타성은 토픽 간 유사성이 낮음을 의미한다(장재윤 등, 2020). 지속성 지표는 데이터 일부에도 해당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예측력을 나타내고, 잔차는 토픽 모델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타낸다(백영민, 2020). 최적의 토픽 수는 앞의 세 가지 기준 값을 최대화하

고, 잔차를 최소화하는 토픽 수이다.

토픽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1개 단위로 각 모델마다 의미적 일관성 및 배타성 지표를 확인한 후에 정성적 분석을 통해 최종 토픽 수를 결정했다. 토픽 수별 의미적 일관성, 배타성, 지속성 및 잔차는 '표 1'과 같다. 의미적 일관성은 토픽 수 2개에서 5개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5개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배타성도 토픽 수 2개에서 5개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5개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지속성은 토픽 수에 따라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잔차는 토픽 수 2개에서 5개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토픽 수 6개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참고해 토픽 수 후보를 3개와 4개로 추렸고, 연구자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토픽 내용 간 중첩이 비교적 적으면서 많은 토픽을 추출할 수 있는 4개를 최종 토픽 수로 결정하였다.

토픽 명명

토픽 추출 과정을 통해 얻은 4개의 토픽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 각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와 각 토픽의 대표 문서를 확인했다(표 2). 각 토픽의 주요 단어는 stm 패키지의 labelTopics 함수가 제공하는 'Highest

표 1. 토픽 수별 통계 지표

토픽 수	의미적 일관성	배타성	지속성	잔차
2	-27.141	6.195	-5.392	1.542
3	-33.838	7.426	-5.303	1.736
4	-41.660	8.107	-5.401	2.126
5	-51.089	8.495	-5.391	3.454
6	-51.845	8.673	-5.548	13.918

Probability’, ‘FREX’, ‘Lift’, ‘Score’라는 4가지 기준별로 확인할 수 있다. ‘Highest Probability’는 각 토픽에서 해당 단어가 출현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FREX’는 한 토픽에는 출현하지만 다른 토픽에는 출현하지 않는 배타성을 출현 확률에 반영한 지표이고, ‘Lift’는 특정 토픽에 고유한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단어가 다른 토픽에서 출현한 빈도를 이용한 지표이고, ‘Score’는 특정 토픽에 고유한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단어가 다른 토픽에서 출현한 빈도의 로그 값을 이용한 지표이다(백영민, 2020).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기준 중 ‘Highest Probability’와 ‘Score’에 주목하였다 (Schmiedel et al., 2019; 장재윤 등, 2020).

각 토픽의 주요 단어와 대표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픽 1은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으로, 토픽 2는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로, 토픽 3은 ‘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으로, 토픽 4는 ‘여론과 유사개념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표 2).

결 과

아래에서는 우선 근거이론 분석 결과를 이론적 코딩 범주별로 제시하고, 토픽 모델링 결과를 각 토픽의 대표 문서의 핵심적 내용을 4개의 토픽별로 제시한다. 그 다음 양자를 비교한다.

결과 제시에서 연구 참여자의 발언을 인용

표 2. 토픽별 주요 단어 및 대표 문서

토픽 ID	토픽 이름	주요 단어	대표 문서 ID
1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	양형과 기준 인식	Highest Prob: 양형, 기준, 여론, 사건, 심리, 사실, 법관 FREX: 유무죄, 기준, 양형, 심리, 검찰, 기속, 정당성 Lift: 구형, 구형량, 기간, 마음속, 변제, 분석, 설득 Score: 극복, 기준, 유무죄, 심리, 가중, 법무부, 차원	형사08 형사13 형사15
2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	가치 인식	Highest Prob: 법관, 여론, 판단, 사실, 법률, 사건, 보수 FREX: 보수, 진보, 노동, 발견, 가치관, 적용, 민주주의 Lift: 강간, 강의, 강좌, 개입, 개정, 거짓말, 경력 Score: 보수, 진보, 거짓말, 노동, 발견, 가치관, 민주주의	행정03 행정28 행정16
3 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영역	여론 영역	Highest Prob: 국민, 법관, 여론, 법감정, 재판, 형사, 상식 FREX: 참여, 민법, 이론, 점진적, 총칙, 기자, 법학 Lift: 경청, 남자, 민법, 서울, 인권, 제공, 좋아요 Score: 근절, 참여, 민법, 총칙, 점진적, 기자, 이론	민사05 형사26 민사11
4 여론과 유사개념 구분	여론 구분	Highest Prob: 여론, 사건, 판단, 사실, 사회통념, 사회, 법관 FREX: 순간, 위자료, 해결, 사법부, 반영, 관심, 누진제 Lift: 간부, 감내, 강자, 개념적, 개선, 개인정보, 개진 Score: 검증, 사법부, 해결, 순간, 위자료, 단어, 방향	민사04 민사19 민사12

할 때, 각 연구 참여자는 XXYY 형식으로 표 현된다. XX는 ‘민사’, ‘형사’, ‘행정’ 중 하나로 연구 참여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종류를 의미하고, YY는 연구 참여자의 ID 번호이다.

근거이론 분석 결과

여론의 개념화

개별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여론은 그 정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여론이야 어차피 특정 이벤트나 이슈 관련해서 형성되는 게 …(민사12)

댓글이라든가 신문 사설 그런 걸 보면 …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일시적인 것 일 수도 있거든요 …(민사07)

감정적인 부분에 따라갈 수가 있어서, 그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형사21)

강자나 어떤 가진 사람에 대한 좀 무분별한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론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형사22)

반면에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론은 그 합리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예를 들어, 양형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고, 법관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여론 중에는 … 사회의 큰 변화를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 이를테면 예전에 성범죄 양형이 약했던 게 여자에 대해서는 입법적이 대우가 부족했다가 이제 평등한 사회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형사22)

성폭력 사범 같은 경우에는 양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사회적,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 양형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형사08)

여론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합리성이란 것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03)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 사안에 대한 여론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거나 언론에 의해 오도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여론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잘못된 정보 또는 이상한 언론에서 제보되는 그런 허위 보도라든지 그런 거에 쏠려가지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행정14)

법적 안정성이랑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여론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잖아요.(형사08)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여론의 형성 과정,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일단 여론이라는 게 사실 무엇이 여론인지, 네이버 뉴스 댓글에 달리는 것들이, 댓글 순위 높은 것들이 과연 여론인지,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민사07)

여론의 압박을 느끼면 그 여론이 정말로 이 판결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선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든가 …(형사08)

여론과 유사 개념의 구분

‘사회통념’, ‘사회상규’, ‘상식’, ‘국민 법감정’은 안정성, 정당성, 인식의 대상 등에서 여론과 구별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첫째, 사회통념과 사회상규는 논리적이나 경험적, 상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그리고 상식은 법관의 생각에 기초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통념을 판결·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여론과 유사하다고 규정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론을 의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친반이라든가 어떤 틀의 방향을 요구하는 이런 의견과는 달리, 무색무취하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을 반영할 때 쓰는 표현인 것 같고요. 여론에 관해서라면,

면, 여론의 성격을 좀 세분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형사 22)

사회상규에 반한다 … 표현을 쓰는 경 우인 것 같아요. …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인 경우에 이런 단어들을 판결문에 쓰는 것 같거든요. 여론이란 것은 관심 정도겠죠.(민사36)

그리고 명의선택 규제나 토지 공개법에 대한 사회통념은 사적 가치와 개인 소유권을 강조하는 민법 도그마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법관은 이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념법학의 도그마가 국민들하고 인식하고 분명히 괴리된 경우가 있거든요. … 도그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래된 민법 총칙의 개념들, 민법의 기본 개념들 또는 우리 선배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국민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작게는 판사사회, 그 어떤 법률가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식들과 사회인식하고 약간 마찰이 있을 때는 사회인식에 대해 조금 오픈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민사 05)

둘째,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정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나 반응으로 이해되었다. 우선 국민 법감정은 아직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특정 쟁점이나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 다수가 ‘법은 아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범화된 인식으로 이해되었다. 반면에 국민정서는

규범화된 인식인 법감정과 달리 특정 쟁점이나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 정도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국민 법감정은 국민정서보다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민들의 견해로 이해된다.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정서 같은 거는 … 판결을 비판할 때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고요.(행정03)

국민 법감정과 정서와 상식을 나누자면, 국민 정서는 지금의 분위기, 지금의 감정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국민 법감정은 감정을 넘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이래야 한다고 믿는 정도까지 상당히 규범화가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국민 법감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상식 까지에는 도달하지 않은 거죠.(민사11)

국민 법감정과 국민정서라는 개념에 ‘감정’과 ‘정서’라는 유의어를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법감정에 대해서는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국민정서에 대해서는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국민 법감정이 시민들의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견해이기에 국민정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법적 사건의 특수성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법적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우선 법률 제정·개정을 고유 업무로 하는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는 ‘법률 해석’을 고유 업무로 하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 입법부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입법에서는 적어도 다수결에 따라서 입법이 됐다면, 그 입법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유로워야 되지 않나 …(행정02)

또한 한 참여자는 재판은 정치·사회적 책임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재판 결과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모든 해결이 다 사법부로 통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사법부로 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책임 모두 다 이제 사법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법감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민사36)

또한 법적 사건의 종류에 따라 여론 등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민사사건에서는 여론의 영향력이 약하지만, 행정사건에서는 판사가 여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한 부장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사건(형사사건)에서는 배심원과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식에 근거한 배심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사랑 형사는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상식적인 판결이 나야만 하고 그게 대개의 경우 국민의 정서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정확할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이 민사에서는 선호되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식이니까.(민사11)

행정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회 관련] 집행정지 사건이 지금 매주 있는데 …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주시하고 여론이 뭔가, 국민과 나갈 방향이 뭔가 이거를 항상 주시를 해야 되는데 … 계속 뉴스를 들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상관있는지 관심 있게 보거든요. (행정14)

상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참여재판을 하고 있고 참여재판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참여재판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 배심으로 참여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 [그 판단을] 따라가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한다. … 배심과 저하고는 이제 같은 재판을 같이 본 거죠. 자료도 다 같이 봤고 재판을 같이 했었으니까.(형사26)

가치의 충돌 문제와 여론의 관계

법관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 사이에서 직업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사건과 같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즉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

에서 법관은 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은 법발견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법관의 개인적 관점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노동 사건에 차별시정제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할 때, … 평등원칙에 반한 경우 이렇게 뭔가 구성요건이 광범위할 때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여론 같은 게 법 발견의 도구나 수단으로써 작용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행정03)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재판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에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관 개인의 가치관보다는 법에 담긴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헌법 변천과 같은 예는 사회의 가치관 변화가 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도 판사들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민사12)

법이라는 게 결국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 국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투

쟁과 타협의 산물로서 … 그 법률에 입법 목적을 발견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내 가치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행정03)

여론이라는 것이 … 헌법도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나 그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발견하는 수단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행정03)

법관의 독립과 여론의 관계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여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론을 압력으로 느끼기도 했다. 법관이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접하는 여론은 외부 압력으로 느껴진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판결이 여론과 괴리되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외압, 그런 논란은 있었으나 요새는 그런 건 없고. 요새는 정말 여론이 가장 큰 외압이기도 해요. 여론이나 인터넷, SNS 그런 부분들.(행정14)

댓글이라든가 신문 사설 그런 걸 보면, … 사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런 지금 주류적인 그런 의견들과 뭔가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을 때 따르는 그런 비판 그게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고민이 될

것 같고.(민사07)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새기며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헌법 제103조에 정하고 있듯이 법관은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에 반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독립은 재판을 통해 다수결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이나 강단, 부정적 여론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원은 다수결이 아닌, 전문 법관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뭔가 그런 다수결의 오류를 시정해 보자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행정03)

주변에서 큰 사건 맙아서 판결하시고 나서 안 좋은 댓글들, 올라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 마음의 어떤 균형추, 적어도 내가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는 방법과 좀 결론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소신이나 강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형사22)

그리고 여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재판 시 불필요한 정보를 보지 않기 위해 SNS나 기사 댓글 등을 보지 않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판결 비

판 보도는 합리성이 있으므로 법관은 이에 수용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형사를 오래 했거든요. 형사 재판을 서울에서 한 두 해 정도 하고 나면 SNS도 다 끊고. 이렇게 탈퇴하고 뭐 없애고 그렇게 돼요(형사26)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자들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 기사에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사가 크게 잘못된 거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민사04)

한편 연구 참여자 중 상당수가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영역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무죄 판단 및 사실관계 확정에서 법관은 여론의 영향을 차단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무죄 판단 및 사실관계 확정에서 여론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이유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해당 사안에 대한 그릇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무죄에 있어서는 여론에 휩쓸리는 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형사08)

사실관계 확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론과는 단절을 하고 법정에 노출된 주장만 가지고 사실을 확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민사04)

다음으로,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에 반하더라도 법관은 재판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를 보

호해야 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수자 보호, 적법절차 원리 같은 핵심적인 가치들은 국민들이 수용하고 이해해 주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못 받아 줄 때는 불행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민사05)

다만 소수자 보호, 절차적 정의 준수, 최소한의 기본권 이런 세 가지 정도는 법원에서 국민 법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민사11)

양형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

양형은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며, 특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양형 판행에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범도 주범 못지않게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처음에 형사 항소부에 와서 당황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언뜻 본인이 한 책임 그 관점에서만 보면 되게 너무 벗어나는 무거운 처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형벌의 목적이 또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한다.(형사31)

보이스피싱을 조직범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한 사건은 완전 제일 우두머리가 아니고 이제 중간관리자인데 그 사람을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 사기죄니까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엄벌하라는 여론을 반영해서 …(형사13)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이나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는 국민 법감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그리고 양형 관행과 양형 기준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국민과 입법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국민들의 지속적 요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양형 부분도 너무 낮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같은 부분도 사실 너무 낮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순간적으로 된 건 아니고 지속적인 요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민사37)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면 양형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형사08)

기존 양형례와 변화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판사가 둘 다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것을 절충시켜 나가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민사11)

그러나 특정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특정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법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형도 나는 사실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 재판부는 양형을 얼마나, 어떻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법정형 최고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형사08)

한편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드러났다.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판결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양형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거나, 양형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양형 심리가 부실해졌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

양형 기준이 생김으로써 인해서 양형 심리를 더 안 할 근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형 기준을 너무 활용을 해서 마치 양형 기준을 안 따르는 게 약간 문제인 것처럼 …(형사 08)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 1: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

‘양형, 기준, 여론, 사건, 심리’나 ‘극복, 기준, 유무죄, 심리, 가중’과 같은 토픽 1의 주요 단어와 대표문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토픽 1은 양형과 여론의 관계 및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저는 우리 재판이 지금까지 유무죄 판단 되게 집중을 했는데 양형 심리를 실제

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 여론이 양형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게 성범죄인데, …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면 양형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형사08)

양형 기준에 관해서 적용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거든요. … 피해가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오. 십만 원 정도를 편취한 사건을 양형기준을 따라가 보면 징역 2년 6월이 나오거든요 …(형사13)

양형 기준을 판결문에 쓰면 당사자들이 뭐랄까 좀 수긍하는 비율이 높아진 대요. … 당사자한테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도구다. … 양형에 굳이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거는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 같아요 …(형사15)

토론피 1에 할당된 대표문서에서는 양형 및 양형기준에 대한 내용 외에도, “법적 안정성이랑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여론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잖아요.”(형사08)와 같이 여론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소수자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 …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휩쓸리는 것은 법관의 사법권의 독립하고도 맞지 않는다.”(형사15)와 같이 여론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피 2: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

‘법관, 여론, 판단, 사실, 법률’이나 ‘보수, 진보, 거짓말, 노동, 발견’과 같은 토론피 2의 주요 단어와 대표문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토론피 2는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론이라는 것이 … 헌법도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나 그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발견하는 수단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03)

사실 판사로서 들을 수 있는 제일, 이런 문제에서 제일 큰 청찬은, 이 판사는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 기록을 보고 기록에서 나타난 사실관계가 나를 이끄는 곳으로 판결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수처럼 보이고, 저기서는 진보처럼 보이는 이런 판사가 제일 훌륭한 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행정28)

법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해석상 대치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법관의 역할을 벗어나서 입법자가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 입법 취지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행정16)

토론피 2에 할당된 대표문서에서는 가치 인식 문제에 대한 내용 외에도, “사회통념, 사회상규, 상식 이런 단어는…여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행정03)와 같이 여론과 유사 개념을 구분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요.”(행정28)와 같이 여론 등으로부터 유보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픽 3: 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

‘국민, 법관, 여론, 법감정, 재판’이나 ‘근절, 참여, 민법, 총칙, 점진적’과 같은 토픽 3의 주요 단어와 대표문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토픽 3은 여론이나 법감정에 반하더라도 법관이 수호해야 하는 영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수자 보호, 적법절차 원리 같은 핵심적인 가치들은 국민들이 수용하고 이해해 주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못 받아 줄 때는 불행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민사05)

형사 재판을 서울에서 한 두 해 정도하고 나면 SNS도 다 끊고 … 재판은 거기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여론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한 여론이 뭐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여론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좌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형사26)

소수자 보호, 절차적 정의 준수, 최소한의 기본권 이런 세 가지 정도는 법원에서 국민 법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핵심적인 면이 아니라면 저는 국민 법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민사11)

토픽 3에 할당된 대표문서에서는 법관이 수호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내용 외에도, “개념 법학의 도그마가 국민들 인식하고 분명히 괴

리된 경우 … 도그마와 안 맞더라도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오픈하는 태도는 좋은 거 같고”(민사05)와 같이 사회통념에 대한 수용적 자세에 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참여재판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 배심으로 참여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 이 참여재판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든 난 따라간다.”(형사26)나, “민사 같은 경우는 … 국민의 정서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정확할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같거든요.”(민사11)와 같이 사건의 특수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픽 4: 여론과 유사개념에 대한 인식

‘여론, 사건, 판단, 사실, 사회통념’이나 ‘검증, 사법부, 해결, 순간’과 같은 토픽 4의 주요 단어와 대표문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토픽 4는 여론과 유사 개념의 구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 중에서 법리가 적용이 된다기보다 법리가 적용된다기보다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도 여론은 뭐, 당연히 여론이 무슨 다를 이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따라가진 않겠지만,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참작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민사04)

사회통념, 아니면 사회상규 이거와 여론과, 어, 다른, 완전 다른 거가 당연하다 … 여론은 사실 어디에서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시위나 그런 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론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국민정서라는 것도 사실은 … [헌법]재판관들이

표 3. 토픽 분류 및 전담 사건 종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토픽1 양형과 대한 인식	토픽2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 문제	토픽3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 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	토픽4 여론과 유사개념에 대한 인식
intercept	Estimate	0.03	0.36**	0.18	0.46**
	(Std.E)	(0.07)	(0.10)	(0.10)	(0.12)
형사 담당	Estimate	0.32*	-0.28	0.16	-0.21
	(Std.E)	(0.13)	(0.18)	(0.18)	(0.20)
intercept	Estimate	0.16*	0.07	0.30**	0.46**
	(Std.E)	(0.08)	(0.07)	(0.27)	(0.11)
행정 담당	Estimate	-0.14	0.69**	-0.27	-0.29
	(Std.E)	(0.15)	(0.14)	(0.19)	(0.22)
intercept	Estimate	0.21*	0.36**	0.21	0.22
	(Std.E)	(0.08)	(0.10)	(0.11)	(0.11)
민사 담당	Estimate	-0.19	-0.28	0.06	0.41*
	(Std.E)	(0.13)	(0.17)	(0.18)	(0.03)

* $p < .05$, ** $p < .01$

다 본인 판단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냥 쓰시는 거라, 실제 여론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민사19)

특정 이벤트나 이슈 관련해서 형성되는 게 여론이어서, 뭐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구분이 될 텐데. 사실 사회통념이라는 것도 판사들이 … 직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 결국 판사들은 본인이 혼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은 사회통념이 이렇다고 생각 하지만 …(민사12)

토픽 4에 할당된 대표문서에서는 여론과 유사 개념 구분에 대한 내용 외에도, “사실관계

확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론과는 단절을 하고 법정에 노출된 주장만 가지고 사실을 확증을 해야 될 거 같아요.”(민사04)와 같이 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밖에서 하는 얘기는…이 사건의 내용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민사19)나 “여론을 주도하고자 하는 특정 일부, 소수자가 활발히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그 여론이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호도가 될 수 있는 거”(민사12)와 같이 여론 형성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담당 사건 종류에 따른 토픽 발현 가능성

연구 참여자의 담당 사건 종류를 메타정보로 활용하여 ST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담당 사건에 따른 토픽의 발현 가능

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첫째,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녹취 문서에서 토픽 1(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의 발현 가능성은 높았다. 형사 사건의 결론은 유무죄와 양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양형과 양형기준에 관한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녹취 문서에서 토픽 2(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의 발현 가능성은 높았다. 노동 사건이나 시위금지와 같은 행정 사건은 정책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를 자주 언급할 개연성이 높다.

셋째,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녹취 문서에서 토픽 4(여론과 유사개념에 대한 인식)의 발현 가능성은 높았다. 민사 사건에서는 거래 관행과 같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이 중요하게 고려되기에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여론과 구별되는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대해서 언급할 개연성이 높다.

넷째, 토픽 3(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의 발현 가능성은 연구 참여자의 담당 사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수자 보호,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의 실현과 같은 헌법적 가치는 사건 종류와 상관없이 본 연구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 비교

토픽 모델링 결과와 근거이론에서 도출된

이론적 코딩 범주는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을 보인다(표 4). 각 토픽은 근거이론에서 도출된 이론적 코딩 범주들과 겹친다. 특히, 토픽별 대표문서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주제는 토픽 간에 중첩되지 않았고, 근거이론에서 도출된 이론적 코딩 범주의 내용에 부합하였다. 예를 들어, 토픽 1의 핵심 주제는 양형에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과 양형기준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근거이론에 따른 이론적 코딩 범주 중 ‘양형에 대한 여론 영향력’의 하위 범주인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과 ‘양형과 여론 등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한편 근거이론에 따른 범주 중 ‘법적 사건의 특수성’과 ‘가치의 충돌문제와 여론 관계’는 각각 하나의 토픽에서만 다루어졌다. 반면에 ‘법관의 독립과 여론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모든 토픽의 대표 문서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토픽 모델링 결과와 근거이론 결과가 상당한 정도로 상응하지만, 하나의 토픽이 하나의 범주와 일치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분석 대상인 각 문서에는 둘 이상의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토픽은 근거이론에서 도출된 초점코딩 범주 정도의 추상화 수준에서 패턴을 기술한다. 이는 토픽 모델링과 근거이론을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Baumer et al., 2017). 예를 들어, 토픽 3(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은 이론적 코딩 범주 ‘법관의 독립과 여론 관계’의 하위 범주인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이 유보되어야 하는 영역’을 포착하였다. 이는 범주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로 추상화 수준을 높여가는 근거이론 접근법의 특징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표 4. 토픽 모델링에 따른 토픽과 근거이론에 따른 이론적 코딩 범주 간 유사성

근거이론 범주	여론 개념화	여론과 유사 개념 구분	법적 사건 특수성	가치의 충돌문제와 여론 관계	법관의 독립과 여론 관계	양형에 대한 여론 영향력
토픽 모델링 토픽						
1.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	여론의 취약점				여론 배제 영역	영향 및 양형기준 인식*
2. 가치에 대한 인식 문제		사회통념 등의 영향력		가치 인식과 여론†	여론 배제 영역	
3. 여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		사회통념 등의 영향력	민사재판, 국민참여재판		법관이 보호해야 할 영역*	
4. 여론과 유사개념에 대한 인식	여론의 취약점	사회통념 등에 대한 이해*			여론 배제 영역	

* 토픽별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주제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내용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근거이론에 따른 범주 분석과 토픽 분석을 통해서 법관들이 여론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재판과의 관계에서 여론에 대해 어떤 입장 을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분석 방법으로서 토픽 모델과 근거이론의 상보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법관들은 여론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상규, 사회통념, 법감정, 국민정서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회상규는 법적인 의미에서 규범으로 인식되고, 사회통념은 법적인 의미

에서 규범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사실로 인식된다. 반면에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정서는 법적 이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나 반응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법감정은 국민정서보다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처럼 사회상규와 사회통념은 법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상규는 법률상 정당행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형법 제20조) 있기에 법적 판단에서 고려해야 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은 논리적 경험칙이나 상식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에서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고려될 수밖에 없다. 법학이 뿌리를 두고 있는 실천철학의 전통에서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상식은 실천적 판단에서 일종의 척도로 작동한다(박은정 · 김

현섭, 2017).

법관들은 대체로 여론을 특정한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고, 재판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의 배경에는 여론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여론 형성 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에 개별 사안이 아닌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여론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여론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여론은 ‘사회통념으로서의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으로서의 여론’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여론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담당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달랐다. 여론에 대한 법관들의 입장은 담당 사건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사 사건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여론이 해당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위자료 산정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은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둘째,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특정 사건과 관련된 여론이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확정 과정이나 법령의 해석 단계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지만, 양형 부분에서는 ‘국민 법감정으로서의 여론’을 참고할 만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셋째, 행정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당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정책적 문제에 관한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한 여론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사건 종류와 상관없이 FGI 참여 법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사회 통념,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소수자 보호, 절차적 정의 준수, 기본권 보장과 같은 문제는 사회 통념이나 국민 법감정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사회통념으로 자리 잡았다면 법관은 이러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회통념을 초월하여 인간 본질에 대해 살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은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성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박은정 · 김현섭, 2017). 그리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자신의 성찰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게 해주는 헌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근거이론과 토픽 모델링의 상보성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근거이론 분석 결과와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는 상당한 유사성을 띤다. 해석학적 접근법에 뿐만 아니라 근거이론 접근법과 계량적 접근법의 한 갈래인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데에는 두 방법론의 작동 원리에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과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분석하였던 바우머 등(Baumer et al., 2017)은, 이 두 방법이 주제의 패턴을 확인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반복적 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과 같은 기계 학습은 질적 접근인 텍스트 해석 작업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Leahu & Sengers, 2014).

한편 근거이론 접근법과 토픽 모델링을 실제 연구에 적용할 때 차이점이 드러난다. 근거이론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분석 대상 자료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법관을 대상으로 한 FGI 내용에 대한 코딩 과정에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념을 범주로 추상화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본질, 법관의 역할,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민주주의와 사법의 관계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반면에 단어 사용의 통계적 규칙성을 분석하는 토픽 모델링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인 텍스트와 관련된 맥락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물론 토픽 모델링으로 도출된 토픽 자체가 해석되어야 하는 새로운 텍스트이기 때문에 (Baumer et al., 2017) 토픽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토픽과 관련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토픽 모델링이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모델은 관찰의 직접적인 표상이 아니라, 다시 독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텍스트다. 설문 응답과 달리 다양한 주제가 얹히고 은유적 표현이 포함되기 쉬운 인터뷰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토픽 모델링은 한 텍스트 안에서 주의를 더 기울일 부분과 여러 텍스트 중에 상호 연관성을 더 검토해야 하는 텍스트들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텍스트의 양이 많을수록 토픽 모델링을 통한 자료의 축약은 연구자의 선택과 집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과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분석하여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 연구들과

구별된다. 우선 인터뷰 내용 분석에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였던 선행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결과만을 토대로 토픽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두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두 방법의 상보성을 살폈다.

한편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기존 연구에 비해서 분석 대상 텍스트의 양이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근거이론과 토픽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였던 바우머 등(Baumer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1,095명의 개방형 응답이 분석 대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4명의 현직 법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출현 빈도가 낮은 단어가 토픽 모델링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점은 인터뷰 대상이 법과 관련 된 개념어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전문가라는 점으로 보완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담당 사건 종류에 따라 여론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이 달랐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그룹별로 인터뷰하는 FGI 방법을 썼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각 그룹에서 참여자들은 자신과 담당 사건이 같은 참여자나 담당 사건이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당 사건을 인터뷰의 맥락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터뷰 맥락이 없는 일반적 상황에서도 판사들이 담당 사건에 따라 사회여론에 대한 고려 여부를 다르게 생각할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반화를 위해서는 인터뷰 맥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이때 본 연구 결과는 실험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과 시나리오 작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법관들은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여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여론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법적 판단에 대한 사회여론의 영향력에 관한 실험 연구나 설문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관들은 사회여론을 단순히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의견 제시의 대상(개별 사건/법·정책), 의견의 형성과정(일시적/지속적), 사건의 종류(민사/형사/행정), 재판의 단계(사실 확정/유무죄 판단/양형) 등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과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 조건이나 설문을 구성하는 데 법관이 생각하는 여론의 다면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여론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관한 규범적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여론에 대해 법관이 취해야 하는 입장에 관한 기준의 법학적 논의에서는 여론을 세분화하여 이해하기보다 외부적 압력으로 상정하는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사회상규-상식-사회통념-법감정-국민정서’라는 스펙트럼에서 고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형성 과정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에 따라 ‘국민 정서로서의 여론’이 되기도 하고, ‘사회통념으로서의 여론’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여론과 재판의 관계에 대한 법학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적 발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9). 인터넷상 여론조작의 실태와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1(1), 287-315.
- 공영호. (2015).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6(3), 483-504.
- 김병수. (2015). 유무죄판단과 양형심리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형사법연구*, 27(1), 109-145.
- 김웅규. (2013). 공적 사안(matter of public concern)의 규범적 의미. *홍익법학*, 14(2), 191-220.
- 김청택. (2019).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리학 연구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4), 519-548.
- 김현석. (2019). 재판의 진행·판단에서 법관의 정서에 관하여. *법조*, 68(1), 254-306.
- 김현섭·박은정. (2017). 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덕목의 실증적 분석 및 실천방법론.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 박은정·강태경. (2016). 법관의 자기이해에 관한 경험적 연구. *법과 사회*, 53, 185-221.
- 박은정·강태경·김현섭. (2015). 바람직한 법관상의 정립과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 박종현. (2016). 헌법질서 내에서의 법원의 지위와 역할. *헌법학연구*, 22(1), 1-38.
- 백영민. (2020). R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개정판. 한울.
- 손병덕·김민선·허계형. (2020). 토픽분석을 활용한 진로개발활동으로서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7(5), 253-275.

- 유은정. (2012). 미국연방대법원, 사법심사 그 리고 국민. *강원법학*, 36, 309-348.
- 윤진수. (2003). 법관의 윤리.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편, 法律家의 倫理와 責任. 박영사, 137-155.
- 이상돈. (2016). 소통적 합리성과 법관상의 변화-법해석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9(1), 61-98.
- 이상윤a. (2009).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상윤b. (2020). 법관의 진술에 관한 소고. *법 철학연구*, 23(1), 235-286.
- 이세정 · 이상윤. (2008). 2008 국민법의식 조 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정숙 · 박진영. (2020). 텍스트마이닝을 활용 한 마을활동가의 성장경험과 성장의 의미 분석. *인문사회* 21, 11(1), 693-704.
- 이진리 · 박승우. (2021). 1970년대 새마을 담당 공무원의 역할 구조 분석 - 토픽모델링 기 법을 사용한 심층 면접 자료 분석을 중심 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45-65.
- 이태현 · 김청택. (2004). LSA 모형에서 다의어 의미의 표상. *인지과학*, 15(2), 23-31.
- 장재윤 · 최연재 · 강지연. (2020). 국내 ICT 업 종 종사자들의 직장에 대한 불만 요인 분석 및 전/현직자 간 차이 분석: 토픽 모델링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3), 445-480.
- 조규락 · 김선연. (2016). 법관의 역할과 역량 분석. *직업교육연구*, 35(5), 201-229.
- 최성진. (2010).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 원화 경향. *형사정책연구*, 83, 281-310.
- 최우철 · 박서하 · 노승국. (2021). ‘중형선고’ 논란에 따른 형별포퓰리즘에 대한 실증 연구: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의 적 용. *한국범죄학*, 15(1), 131-148.
- 추지현. (2017). 엄별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 판 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8(2), 155-179.
- 하봉준. (2013). 광고 조사 방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 홍영오 · 이영주 · 혀태균 · 김나경 · 윤상연.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VII): 사법판단에서 실제적 진실과 불확실 성에 대한 인식. *형사정책연구원*.
- 홍영희. (2019). 소프트웨어 (SW) 교육 정책에 대한 토픽 분석: 부산지역 종합지를 중심 으로. *통계연구*, 24(2), 52-77.
- Baumer, E. P., Mimno, D., Guha, S., Quan, E., & Gay, G. K. (2017). Comparing grounded theory and topic modeling: Extreme divergence or unlikely convergenc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6), 1397-1410.
- Blei, D., & Lafferty, J. (2006). Correlated topic model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18, 147.
- Boaventura De Sousa Santos. (1995). *Toward a New Common Sense. Law, Science, and Politics in the Paradigmatic Transition*. Routledge.
-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SAGE.
- Collins, T. A., & Cooper, C. A. (2016). The Case Salience Index, Public Opinion, and Decision Making on the US Supreme Court. *Justice System Journal*, 37(3), 232-245.
- Dworkin, R. (1977).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 (1986). *Law's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es, M.W., Blackstone, B., & Vining Jr, R.L.

- (2008). The Supreme Court in American democracy: Unraveling the linkages between public opinion and judicial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Politics*, 70(2), 293-306.
- Glaser, B.G. (1965).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Social Problems*, 12, 436 - 445.
- Glaser, B.G., & Strauss, A.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De Gruyter.
- Hart, H. L. A. (1997). *The Concept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 Hornik, K., & Grün, B. (2011). Topicmodels: An R package for fitting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13), 1-30.
- Johnson, B., & Strother, L. (2021). TRENDS: The Supreme Court's (Surprising?) Indifference to Public Opin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4(1), 18-34.
- Leahu, L., & Sengers, P. (2014). Freaky: performing hybrid human-machine emotion. In *Proceedings of the 2014 conference on Designing interactive systems*, 607-616.
- Mack, K., Anleu, S. R., & Tutton, J. (2018). The judiciary and the public: Judicial perceptions. *Adelaide Law Review*, 39(1), 1-35.
- Posner, R.A. (2008). *How Judges Think*.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2005). *Political Liberalism*, expanded edi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berts, M.E., Stewart, B.M., Tingley, D., Lucas, C., Leder-Luis, J., Gadarian, S.K., Albertson, B. and Rand, D.G. (2014),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 1064-1082.
- Schmiedel, T., Müller, O., & vom Brocke, J. (2019). Topic modeling as a strategy of inquir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 tutorial with an application example o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2(4), 941-968.
- Tamanaha, B.Z. (2004).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22. 02. 21.

심사통과접수 : 2022. 03. 21.

최종원고접수 : 2022. 03. 25.

**Judges'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Comparing Grounded Theory and Topic Modeling in Analyzing
Focused Group Interview with Judges**

Taegyung Gahng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 this study, focused group interviews with 24 incumbent judges were conducted on how they conceptualize public opinion and what attitude they take toward it in relation to judicial trials.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through grounded theory and topic modeling (STM).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results, judges distinguished concepts such as social rules, socially accepted ideas, legal emotion, and public mood from public opinion, and subdivided public opinion into temporary and emotional reactions to specific legal cases and consistent attitudes toward law and polic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judges' attitudes toward public opinion and social norms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s or legal issues. Topic modeling results significantly corresponded to the grounded theory results. In this model, the effects of the types of cases dedicated to participants on topical preval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 Public opinion, Judicial trials, Judges, Focused group interview, Grounded theory, Topic modeling

부 록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구성된 코딩 범주

초기코딩 범주	초접코딩 범주	이론적 코딩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은 국민의 생각임 • 여론은 겸증되지 않은, 대중의 관심 정도임 • 여론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임 • 여론의 합리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음 		여론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여론과 지속적 여론을 구분해야 함 • 개별 사안에 대한 여론과 정책적 관점의 여론을 구분해야 함 • 감정적 여론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여론(예: 양형, 양성평등 등)을 구분해야 함 	여론의 다양한 형태	여론의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안에 관한 여론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여론의 형성과정, 내용, 사회의 방향성 살펴야 함 • 무엇이 여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출처 찾기가 어려움 	여론의 내용 등 파악의 어려움	여론의 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언론이 여론을 오도할 수 있음 • 법원은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론 오도 막을 수 있음 	언론에 의한 잘못된 여론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은 그 형성과정의 정당성이 의문스러울 경우가 있음 • 여론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음 	여론의 정당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념은 논리적 경험칙이나 상식과 유사함 • 사회통념은 장기간 숙성되어 안정적임 • 사회통념은 법관의 생각임 • 사회통념은 판결·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기에 여론과 유사함 • 도그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통념에 대해서 수용적일 필요 있음 • 사회통념과 판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상급법원의 임무임 	사회통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상규는 논리적 경험칙과 유사함 • 사회상규는 법관의 생각임 • 상식은 논리적 경험칙과 유사함 • 상식은 법관의 생각임 • 법감정은 상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법은 아래야 한다’는 규범화된 인식임 • 법감정은 일관성 있음 	사회상규에 대한 인식 상식에 대한 인식 법감정에 대한 인식	여론과 유사 개념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정서는 분위기임 • 국민정서는 실제 여론과 무관하게 판사 개인이 판단하게 됨 	국민정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의 역할은 법률 해석이므로 입법의 역할과 다름 • 재판은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절차가 아님 	사법의 고유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사건에서는 여론의 영향력이 약함 • 행정사건에서는 여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 사건(형사 사건)에서는 배심원과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보고 판단하므로 배심원의 상식이 우선되어야 함 	사건의 종류에 따라 여론 등의 영향력 달라짐	법적 사건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에서 사회적 여론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됨 • 정책적 고려에서는 법리와는 별개인 여론이 반영될 수 있음 • 사회의 가치관 변화는 법에 반영될 수 있음(예: 헌법 변천) • 법관 개인의 가치관보다는 정치적 태협의 산물인 법에 담긴 가치를 존중해야 함(예: 노동사건) •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판에 법관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음 • 가치관이 개입되는 추상적 광범위한 개념 해석이 문제될 때, 여론은 법발견 및 법관의 개인적 관점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오류 가능성이 있는 판사의 가치관보다 사회통념을 확인해야 함 	법관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 사이에서의 고민	가치의 충돌 문제와 여론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함 • 인터넷이나 SNS에 나타난 여론은 외부 압력으로 느껴짐 • 판결이 여론과 괴리되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음 	여론에 대한 관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은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에 반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함 •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다수결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 강단 필요함 •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재판 시 불필요한 정보(에스엔에스, 기사, 댓글) 차단 •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판례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함 • 법관은 부정적 여론을 감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지켜내야 함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노력	법관의 독립과 여론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죄 판단 및 사실관계 확정에서 법관은 여론의 영향을 차단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실현해야 함 •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에 반하더라도 법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함 •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에 반하더라도 법관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이 유보되어야 하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 비판 보도는 합리성이 있으므로 법관은 이에 수용적일 필요가 있음 	판결 비판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 기준을 설정하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양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해칠 수 있음 • 양형 기준은 법이 아니므로 기속력 없음 • 양형 기준보다 양형 심리가 필요함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나 구형량 단계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보이스피싱 사건 양형에 여론이 반영됨(엄벌, 사회보호) • 양형, 위자료에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할 수 있음 • 양형을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 양형에 법감정을 반영하여 시대 변화를 따는 것은 국민과 입법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임 • 과도한 엄벌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예: 최순실 사건) 	양형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 등의 관계에 대한 인식	